

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지원기준(안)

1. 추진배경

-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,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지원

2. 사업목적

-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

3. 운영기간 : 2026년 9월~12월(4개월)

4. 지원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
-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‘86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 - * 단, 1월 1일 출생자(주민등록상)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
-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(자격 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 - * 단,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
-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
 - 신·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- 재학생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 -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-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
 -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
- *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

5. 지원 제한

-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
6. 지원내용

□ (지원 범위)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- 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·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
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
*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
*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7. 지원 기간 :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, 학제별·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

학제별 한도	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	5년제	6년제
	한도	4회	6회	8회	10회	12회
학생별 한도	▶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 * 5년제는 10회, 6년제는 12회					

□ (지급방식)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(실비)을 개별 지급

8. 우선지원 기준 : 사업비(장학금) 예산 범위를 초과시 우선지원 기준 적용(대학 자체 기준)

-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다문화가정 > 다자녀순 > 비(非)기숙사생 > 기숙사생 > 성적높은순(직전학기 백분위) > 학년낮은순 > 연소자순(주민등록상 나이 기준)

9. 지원 제외 기준(대학 자체 기준)

- 9월 학적 변동(휴학, 자퇴 등)자 발생자
-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을 위하여 동계(1월, 2월)분은 장학금 지원 제외(계절학기 포함)
-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가 익월 15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자
-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및 소명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자
-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: 천안시, 아산시, 공주시, 경기 평택시·안성시, 충북 청주시, 세종시